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100285		
최초 등록일	2008.08.14	최종 등록일	2023. 12.31

비지팅엔젤스 정보공개서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 805 호

대표전화번호	1544-3183	팩스번호	02-6499-2170
가맹사업부서	영업부	전화번호	02-2051-6691
홈페이지	www.visitingangels.co.kr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2.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
3. 내·외국 기업 여부
4. 인수·합병 여부
5. 사용하게 될 상호, 명칭, 영업표지 등
6. 가맹본부의 직전 3 개 사업년도의 재무현황
7. 현 임원 정보
8. 임직원 수
9. 동일/유사 사업 경영 사실
10.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사업개시일
2. 가맹사업의 연혁
3. 가맹점 및 직영점 수
4.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가맹점 수
5. 당해 가맹사업 외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6.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과 산정기준
7. 가맹지역본부 현황
8. 직전 사업년도의 광고 및 판촉 실적
9. 가맹금 예치
10.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3. 당사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4.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6. 창업자금의 대출
7. 상품이나 용역이나 거래상대방, 가격결정 제한
8.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보호
9.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10.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 경업금지, 관리 감독 등
11. 광고 및 판촉 조건 및 비용 분담 기준
12.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3.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4.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지연이자
15. 당사 또는 그 임원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개설절차, 기간, 비용
2. 분쟁 해결 절차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 이수(최소시간) 여부
2. 교육·훈련 비용
3. 교육·훈련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조치사항

VIII. 가맹본부의 경영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자문 활동
4. 신용 제공 등의 내역
5.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6.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7. 경영자문 활동
8. 신용 제공 등의 내역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 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의 “비지팅엔젤스”)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비지팅엔젤스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I.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주)비지팅엔젤스 코리아	비지팅엔젤스 외 2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805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7.11.27.	2007.11.27.	김한수	1544-3183	02-6499-2170
	법인등록번호	110111-3794173	사업자등록번호	220-87-58015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김한수/ (주)비지팅엔젤스 코리아	비지팅엔젤스,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비지팅엔젤스요양시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80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김한수	02-1544-3183	02-6499-217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차녀 (임원)	김정연/ (주)비지팅엔젤스 코리아	비지팅엔젤스,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비지팅엔젤스요양시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80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김한수	02-1544-3183	02-6499-217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정구은/ (주)비지팅엔젤스 코리아	비지팅엔젤스,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비지팅엔젤스요양시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80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한수	02-1544-3183	02-6499-217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외이사)	강인석	비지팅엔젤스,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비지팅엔젤스요양시설	서울시 서초구 23길41신반로제2지구아파트101동303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한수	02-1544-3183	02-6499-2170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나 회사를 말합니다.

3. 당사는 내국기업입니다. 다만 당사는 미국의 비지팅엔젤스로 부터 대한민국 비지팅엔젤스 가맹사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입니다. 미국 비지팅엔젤스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미국 Visiting Angels - Living Assistance Service 해외 Visiting Homecare International
영업표지	Living Assistance Services
주된 사무소 소재지	Eagle Rd Suite 201 Havertown, PA 19083
대표자 성명	Lawrence Meigs
대표전화번호	1-610-924-0630

4. 당사는 정보공개서 직전 3 개년간 인수·합병 사실이 없습니다.
5. 귀하가 향 후 영위할 비지팅엔젤스(Visiting Angels)의 명칭·상호·서비스 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비지팅엔젤스	방문천사 비지팅엔젤스는 가정방문 보살핌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명성 있고 신뢰받는 세계적인 시니어케어 전문기업입니다. 시니어케어 부문 29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세계 최고의 홈 케어시

		시스템을 제공하여 어르신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 비지팅엔젤스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상 호	비지팅엔젤스 OO점 (해당 지역명 표기)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688961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6. 가맹본부의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및 별첨 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VAT 미포함)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2,685,920	994,783	1,691,136	4,802,533	360,861	565,975
2022 년	3,190,151	1,158,624	2,031,527	4,871,259	222,653	654,082
2023 년	2,992,324	905,976	2,086,347	5,319,967	150,540	100,916

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의 비지팅엔젤스 외에 비지팅엔젤스요양시설 및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사업은 매출액이 없어서 가.의 매출액은 비지팅엔젤스의 매출액입니다.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한수	대표이사	2007. 7 ~ 현재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대표이사

8. 바로 전 사업년도 말 임직원 수

	김정연	이사	2007. 11 ~ 현재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이사	회계자금관리 및 가맹점관리
	정구은	이사	2014. 8 ~ 현재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이사	가맹점 관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강인석	사외 이사	2007. 11 ~ 현재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이사	

당사의 직전 사업년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 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3	1	140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비지팅엔젤스(Visiting Angels)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호/이름	사업명(정보공개서등록번호)	기 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비지팅엔젤스 노인요양시설(20120100078)	2024 년 예정	노인 돌봄이 시설 요양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20150443)	2016 년~현재	노인 돌봄이 주야간시설 요양 서비스 업종

10.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비지팅엔젤스(Visiting Angels)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건본이미지	권리 범위	출원 및 등록 일자	출원 및 등록 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서비스표	Visiting Angels	가맹점 상호로 사용	출원일자 2019.11.11 등록일자 2021.2.10	출원번호 40-2019- 0173548 등록번호 40- 1688961	비지팅 홈케어 인터네셔널, 인크	2031.2.3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당사의 당사의 영업개시일은 2007년 11월 27일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에 맞추어 가맹점은 2008년 7월 1일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 비지팅엔젤스의 연혁

비지팅엔젤스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비지팅엔젤스 코리아	비지팅엔젤스	김한수	2007.11~현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 804,5,6 호

3. 비지팅엔젤스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비지팅엔젤스	대분류	소분류
	기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비지팅엔젤스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비지팅엔젤스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00	98	2	111	109	2	111	109	2
서울	38	37	1	41	40	1	34	33	1
인천	4	4	0	5	5	0	5	5	0
부산	4	4	0	5	5	0	8	8	0
대구	2	2	0	2	2	0	4	4	0
광주	1	1	0	1	1	0	0	0	0
대전	2	2	0	2	2	0	2	2	0
울산	1	1	0	1	1	0	1	1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37	36	1	40	39	1	44	43	1
강원	2	2	0	2	2	0	2	2	0
충북	1	1	0	1	1	0	2	2	0
충남	2	2	0	3	3	0	2	2	0
전북	1	1	0	1	1	0	1	1	0
전남	1	1	0	1	1	0	0	0	0
경북	2	2	0	2	2	0	3	3	0
경남	2	2	0	4	4	0	3	3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비지팅엔젤스(Visiting Angels)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직전 3 년간 신규 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 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연 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 말
2021 년	98	21	15	6	0	98
2022 년	98	18	3	4	0	109
2023 년	109	18	8	10	0	109

6. 비지팅엔젤스(Visiting Angels)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인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 분	상 호	영업 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 종	가맹점 및 직영점 수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가맹 본부	비지팅 엔젤스	비지팅 엔젤스 요양시설	20120100078	노인 돌봄이 시설 요양 서비스 업종	-	-	-
가맹 본부	비지팅 엔젤스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20150443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 입소 요양서비스업종	1/1	1/1	0/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해당없음”

당사는 가맹사업개시 시점인 2007년 이래 POS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액 및 고객현황에 대해 보고 받지 않고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8. 비지팅엔젤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비지팅엔젤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년	109	1654 일(4 년 6 월)

9. 당사는 비지팅엔젤스(Visiting Angels)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0. 공개일 사업연도의 당사의 연간 광고 및 판촉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비지팅엔젤스 가맹사업관련 광고 및 판촉비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구분	수 단	기간 및 일자	지출금액(단위: 천원, VAT 미포함)			비 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48,501	48,501	-	
광고	소계	비공개	48,501	48,501	-	
	비공개	비공개	110	110	-	
	비공개	비공개	1,595	1,595	-	
	비공개	비공개	-	-	-	
	비공개	비공개	46,796	46,796	-	
판촉	비공개	비공개	-	-	-	

11.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 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개인상품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 가 9-1 번지	02-2073-5412~14

12.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	-----	----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 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개인상품부) 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이용 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인터넷뱅킹 (www.kbstar.com) 접속 → ③ (기업서비스)클릭 → ④ (SOHO센터)클릭 → ⑤ (가맹금예치제도)클릭 → ⑥ (가맹점사업자)클릭 → ⑦ (가맹금예치금 예치)클릭 → ⑧ 가맹금예치 완료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국민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 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 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입금을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수입니다. 인터넷뱅킹 가입은 대리인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여 본인이 직접 국민은행에 방문하셔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국민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맹금예치에 관한 업무는 매장 업무시간(09:00~17:00)에만 가능하며 휴일 및 토요일에는 불가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를 신청한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9.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가. 최초 가맹금

구 분	내 역	금 액 (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 계		38,500,000원		
가맹비	비지팅엔젤스 상표권 사용, 가맹지역독점권 비용	16,500,000원	가맹점 개점 이전 해지 시 미이행 채무 분에 대하여 반환됨. 단, 가맹점 개점이후에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이행된 채무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점 후 반환될 수 없음
교육비	사업 운영 교육비	5,500,000원		교육시작 이후 반환되지 않음
초도 물품비	운영초기물품 비용	2,200,000원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필요 한 비용이므로 이행된 채무 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으 며 개점 후 반환될 수 없음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필요 한 비용이므로 이행된 채무 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으 며 개점 후 반환될 수 없음
신규오픈 준비비용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제반비용	5,500,000원		
신규지점 집중지원	개점 후 지점 운영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비용	3,300,000원		
온라인 마케팅지원	지점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지원 비용	5,500,000원		

나. 계약이행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없습니다.**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구 분	금 액(원, VAT 포함)
합 계	₩38,500,000 원
가 맹 비	₩16,500,000 원
교 육 비	₩5,500,000 원
초도물품비	₩2,200,000 원
신규오픈준비비용	₩5,500,000 원
신규지점 집중지원	₩3,300,000 원
온라인마케팅 지원	₩5,500,000 원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시설기준 16.5 m² 기준 /단위: 원/VAT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 고
총 계		3,300,000	660,000			
집기/설비	직접구입 및 설치	3,300,000	660,000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구입 및 설치	-	불필요 시 진행하지 않아도 됨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기본적으로 당사에서 영업거점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거점 지역 중에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노인 인구 수,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 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영업 거점지역을 구분하였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적정수의 직원 및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야 하며, 직원 및 요양보호사들이 당사의 경영방침 및 지시를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및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당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요양보호사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니어야 한다.
- 4) 기타 교육에 대한 기준은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사. 사업의 특성 상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 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가맹본부는 당사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가맹점 내부의 인테리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시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

구 분	내 역	지급 대상자	금 액(원) (산정기준, vat 포함)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지급기한 및 비고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가맹 본부	월 ₩150,000원 또한, 가맹점 개점 후 3개월간 로열티지급을 유예한다.	매월 지급되는 소멸성 비용임으로 해당 사항 없음	최초 계약 잔금납입일로부터 계산하며 매월 10일 납입
개점 이후 교육비	수시교육	가맹 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개별 청구
	특별교육	가맹 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 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 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 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 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광고의 성격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부 부담 (가맹본부 30%, 가맹점사업자 측 7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당사는 가맹계약 1년후부터 가맹점 매출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사업자와 전국 규모의 공동광고를 시행할 수 있음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가는 없습니다.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관리, 감독하고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가맹점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단위: 원/VAT 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갱신비	2,750,000	계약연장(갱신) 후 10 일 이전	반환되지 않음	재 계약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귀하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표지에 대하여 당사 및 귀하 모두의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는 영업표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하며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표지변경에 따른 제반비용에 상응하는 일백만원을 귀하에게 지급합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비지팅엔젤스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 운영 중 제3자에게 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는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잔여기간에 대하여 승계받은 양수인은 당사의 양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명의를 변경하여 계약서를 체결하고 양수가맹비 ₩8,800,000원(VAT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가맹비의 납입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비지팅엔젤스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이 계약에 의해 사용허가 받았던 가맹점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잃고 영업을 종료함과 동시에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 매뉴얼 등 운영시스템 지원에 관한 모든 자료 및 기술정보,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가맹본부의 상표권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변형하여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가맹본부의 상호 및 간판, 기타 표시물 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의 모든 상호 기타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즉시 철거 내지 제거해야 하며 이때 철거 및 원상회복비용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한다.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7일 이내에 당사에 제출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온라인상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홍보물 및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상호를 포함한 영업표지를 변형하여 하여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가맹본부로부터 대여 받은 운영매뉴얼 등 운영시스템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5)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경영의 허락이 소멸한 이후는 『비지팅엔젤스(Visiting Angels)』과 동일 혹은 유사 또는 일부 모방에 의한 경영시스템 내지 영업형태, 시설, 외관을 갖고 사업을 하거나 기타 『비지팅엔젤스(Visiting Angels)』와 혼동을 일으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구입 및 임차

귀하가 당해 가맹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도록 권장/강제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가맹본부에서 귀하에게 구입 요구하는 품목은 없습니다.

3.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당사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및 부재료 등을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4.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그에 대한 알선 대가를 수수하는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해당없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6. 당사는 별도의 창업대출은 하고 있지 않으나 다양한 창업자금 대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상품이나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격결정 제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비지팅엔젤스 가맹점 사업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 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로부터 교육받지 않은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마.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장기요양급여	비지팅엔젤스	-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상 65세 이상 인구수 5,000명 기준	기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여부, 독립상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합의내용을 별지 지도에 표시

- 4) 당사는 지역별 특성(노인 인구 수 등)에 따라 영업거점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5)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선택한 영업거점지역의 고객으로부터 당사의 대표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수된 건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 6) 당사는 가맹점간 상권의 충돌로 갈등이 발생되지 않는 목적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 외 영업 활동 서면 요청 시 한시 적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추후 당사의 가맹점이 개설되었을 때 가맹점사업자는 해당지역에서 영업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의 시장 정보를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 7)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행정구역 시, 구(군) 단위 내 가맹점 추가개설이 가능하다.
-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 변동되어 65세 이상 인구수가 5,000명 이상이 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다)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영업거점지역 외에 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해당 고객이 다른 영업지역에서 서비스를 받기를 선택하는 하는 경우 즉, 고객은 서비스를 받을 영업

지역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받은 가맹점은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가맹점사업자가 타가맹점과 영업지역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는 중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중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비지팅엔젤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9.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이며, 갱신 시에도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 갱신에 따른 갱신비용을 지급하지 않지 않은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의 금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4)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공급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5)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6)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당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5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나. 계약연장에 필요한 절차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만료에 따른 내용을 통지하고, 2년 동일기간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 종료 사유는 갱신 거절 사유와 같으며 계약 종료 사유 발생 시 당사는 계약 만료 180 일부터 90 일 사이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2)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 i.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 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 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당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명칭을 사업자/법인명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변경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매뉴얼 준수 의무 또는 매뉴얼 유출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웹사이트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보험 가입하지 않아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매뉴얼 등의 정보를 누출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연간매출액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금전 채무 지급을 2 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양도 규정을 위반하여 양도를 한 경우
- 고객으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 사업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
- 가맹점 영업일 및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하여 3 회 이상 시정경고를 받은 경우
- 복장규정을 위반하여 6 회 이상 시정경고를 받은 경우
- 웹사이트 운영규정을 3 회 이상 위반하여 3 회 이상 시정경고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교육에 불참하여 3 회 이상 시정경고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광고 및 공동판촉 활동에 참석을 3 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 ii.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마)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2 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당사의 영업표지 및 『비지팅엔젤스(Visiting Angels)』을 나타내는 간판 시설물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철거해야 한다.

라.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습니다.

10.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맹점사업자는 서면으로 양도의 의사표시를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는 양수인에 대하여 심사 후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며 당사의 승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로 가맹점운영권을 양수 받을 양수인은 당사의 승인과 동시에 당사에 양수가맹비 (800 만원/부가세별도)를 지급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양수가맹비의 납입이 승인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 및 당사의 승인이 있는 영업거점 지역 변경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본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경업금지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비지팅엔젤스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비지팅엔젤스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경업금지 업종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비슷한 노인 돌봄이 방문 형태의 서비스 업종을 경업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일 개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휴업하기 3일전까지 당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귀하의 사유가 정당할 시 당사는 승인할 수 있고 휴업기간은 최장 1개월로 합니다.

마.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시간을 09:00 개점 18:00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권장 직원 수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1) 경영지도

- 계약이행(Contract): 가맹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의 명성 유지여부 확인.
- 서비스의 표준화: 고객에게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의 유지를 극대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해설 및 지도.
- 시장조사(Market Research): 가맹점의 특성 및 시장변화 분석 방법에 대한 지도
- 판촉(Sales-promotion): 신규 고객 창출 및 판매 촉진활동 지도.
-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 2) 감독

- 가맹점의 운영 및 요양보호사 관리 등의 상태
- 가맹점의 노후화된 설비 및 기기 등의 교체, 보수 상태

i.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의70%/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결정 →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등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ii.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2)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iii.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개점 전 해약에 따른 위약벌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을 오픈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 본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오픈일을 추가 부여할 수 있다.

가맹점 가맹점 오픈 전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개점일 이전 해약하고자 할 경우, 상호 상대방에 대하여 최소 개점일의 7일 전까지 문서로써 그 취지를 예고하고 즉시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약 요청 일자 (기준)	위 약 벌
계약 체결 후 48시간 이내	총 지급할 금액의 10%
계약 체결 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총 지급할 금액의 30%
계약 체결 후 7일 이후 30일 이내	총 지급할 금액의 70%
계약 체결 후 3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총 지급할 금액의 100%

-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계약서 제30조(비밀유지의무), 계약서 제31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금이십만원(₩200,000원)씩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약벌로 당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제41조 내 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해지·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비지팅엔젤스(Visiting Angels)』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iii.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지연이자

- 1)가맹점사업자가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위반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경과 시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 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이율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 2)미지급채무 총당은 이자, 원금의 순으로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우선 총당한다.

11. 당사 또는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 가맹점 개점 절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2-2501-6692~3) - 인터넷 홈페이지 - 방문상담	즉 시	없음
1 차 상담	- 본사방문상담(사업설명)	즉 시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서 사항 검토 - 가맹계약서 검토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검토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인근 10 개 가맹점현황 제공 14 일 이후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제공			
가맹 계약 및 가맹금예치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 가맹금 예치	1 일	가맹비
점포계약	- 점포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15 일정도	
교 육	- 신규지점장교육 마케팅 교육 등	2 일(오전오후포함)	
개 점			

*상기 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나)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개점 전 교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이론교육 및 현장교육, 운영교육을 포함해 7~8 시간 (2 일 소요)이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개점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개점 전 교육훈련 비용은 가맹비에 포함되며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수시교육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수사항(전문강사초빙 교육, 워크숍, 실기교육 등)이 있을 시에는 비용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가맹점사업자 및 요양보호사는 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5.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2 회 이상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VIII. 가맹본부의 경영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라도 당사에서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 등의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당사의 요구로 인한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은 40% 범위 내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프랜차이즈본부 (1544-3183)

4.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해 경영상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 내용 이외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추가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가맹점 방문 인큐베이팅 1,2 차 교육실시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신규가맹점 인큐베이팅 지원	가맹점 오픈 후 조기안정화를 위한 가맹점 방문 인큐베이팅 2 회차 실시	신규 오픈가맹점 전체 지원	가맹점 오픈일로 부터 3 개월내	1. 1 차 인큐베이팅 -재무회계 이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예산안보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력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산세팅 -인트라넷 활용방법 -워크북 -요양보호사 구인 및 구직 및 상담 방법 2. 2 차 인큐베이팅 -Biz/ CGbiz -유형별 고객상담 방법 -육구사정기록지 작성방법 -장기요양 업무포털 전산 교육 -재무회계 전산교육 -사업장 필수교육	
--	---	----------------------	----------------------------	---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강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 805 호
2	경기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1로 6-70 5 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 년 직영점 평균운영기간	비 고
11 년 6 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223,633	

별첨 1.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2023 년, 2022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손익세산서(2023 년, 2022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첨 3. 초도 제공 물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시장

별첨 4. 당사 구입 또는 대여 요구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 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 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구분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별첨] 점포 현황 (2023. 12. 31. 기준)

(1) 직영점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3)

(2)가맹점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